

特殊圖書館과 情報管理의 問題

—圖書館法 改正 試案과 關聯하여—

鄭 賢 淑

(韓國外換銀行 圖書室)

編輯者註：이 글은 1969. 8. 27. 國防大學院 圖書館에서 열린 第3回 全國特殊圖書館大會에서 發表된 論文입니다.

I. 引言

이번 圖書館大會의 發表 主題인 “바람직한 圖書館法의 改正 試案”은 圖書館法이 立法된 後 6년이란期間이 지난 오늘, 그간에 舉論되어 온 法의 問題點을 檢討하고 그 改正 方向을 模索한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큰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에 規定된 重要的 事項은 ① 公共圖書館의 設立, 監督 및 그 施設 基準 ②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規程 ③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對한 規程 ④ 學校圖書館에 對한 規程 ⑤ 司書職에 對한 規程으로 大別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法에 나타난 圖書館의 種類는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되고 있는데 大學圖書館은 大學設置基準令의 支配를 받고 있으나 特殊圖書館은 所屬機關의 法이나 規程에 의해 優先的으로 支配를 받고 있으므로 現行 圖書館法의 規程에는 이 두 館種에 대한 規程이 除外되고 있다.

그리므로 이번의 發表 主題의 內容 중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은 活潑한 論議의 對象이 될 所地가 있으나 特殊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 對해서는 圖書館法上에 새로운 規程을 新設하는 方向에서의 바람직한 圖書館法改正이란 現實的인 面에서 상당히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筆者에게 주어진 特殊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圖書館法의 改正 試案이란 主題는 위에서 본前提에서 볼 때 論議의 餘地가 대단히 制限되어 있다는 點이 考慮되어야 될 것이다.

II. 特殊圖書館의 一般的 考察

1. 性 格

特殊圖書館에 對한 新規 規程의 插入이나 새로운 立法의 可能性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特殊圖書館의

性格을 살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圖書館을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別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와 이 區分에 의한 特殊圖書館을 좀 더 細分해 보면 ① 行政, 立法, 司法部 등 政府各部署에 附屬된 圖書館(例: 國會圖書館) ② 地方自治團體의 各 部處 附屬圖書館, ③ 學術研究機關에 附屬된 圖書館(室) ④ 言論, 調查 및 情報機關에 附屬된 圖書館(例: 新聞社의 調査部 所屬 圖書室, 商工會議所, 經濟人聯合會 圖書館(室) 等), ⑤ 金融機關 附屬圖書室 ⑥ 企業體 및 其他 法人體 附屬圖書館(室) ⑦ 軍隊圖書館(室) ⑧ 特定한 集團, 階層을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例: 兒童圖書館, 盲人圖書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種類는 分類 基準에 따라 經營形態別, 機能別, 利用方法別, 利用目的別, 閱覽方法別資料의 主題 專門性 別로도 나눌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主로 圖書館法에서의 館種 區分 基準에서 본 圖書館을 言及코자 한다.

圖書館法 第3條(圖書館의 種類)에는 “① 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하고”이 區分에 의한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同法 4條). 圖書館法 第3條 4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法人 團體가 圖書館 資料를 蔐集, 整理, 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教養과 調査, 研究 및 테크리에이션 등 그 利用에 供給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같은 特殊圖書館의 定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特殊圖書館은 ① 特殊한 專門的 資料를 蔉集 整理하고 ② 特殊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③ 特殊 部門의 利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施設이다. 따라서 이를 資料의 特殊 性格과 目的의 特殊性, 그 奉仕 對象의 特殊性(非大眾性)으로 因하여 特殊圖書館을 劃一的인 法的 規制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特殊圖書館의 特殊性을 支配하는 劃一的인 法的 規制는 推想의이고 無意味한 것이 될 것이고 어찌한 制

限의이거나義務的인規定도 이特殊性과의均衡으로實現性이稀薄해진다는點이 그것이다.特殊圖書館은例컨대國會(國會圖書館), 言論機關(新聞社圖書館), 研究機關(研究機關圖書館), 軍(軍圖書館), 會社(企業體圖書室)等의組織과運營에干渉하지않고는特殊圖書館에대한法의in義務와權利의規定이不可能하다는것이다.

2. 外國의特殊圖書館

앞에서본바와같은理由로해서가까운日本에서도特殊圖書館에대한條項은 이를圖書館法의範圍에서除外하고있다.日本圖書館法第2條는圖書館法의適用을받는圖書館은「……一般公衆의利用에供하는……地方公共團體, 日本赤十字社또는民法第34條의法人(宗教, 慈善, 學術, 藝術, 其他의公共의利益에이바지하는公益法人)이設置한圖書館……」으로定義하고이를地方公共團體가設置한公立圖書館, 日本赤十字社및公益法人이設置한私立圖書館으로區分하였는데이것은모두그設立目的上公共圖書館의性格에屬한것이다.大學圖書館은우리나라와같이大學設置基準令에서다루고있으며學校圖書館은學校圖書館法을別途制定하여이를取扱하고있다.特殊圖書館에關한法으로는國立國會圖書館法,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法, 點字圖書館에대한身體障害者福祉法등이있다.最近日本衆議院에서情報產業에대한基本法의制定必要성이論議된바있는데이것은콤팍터時代의情報產業의育成을위한必要에서나온것으로圖書館界와의直接적인關聯에서이것이論議되고있는것은아닌것으로알려지고있다.이것은圖書館法과는次元이다른產業振興政策의一部로解釋되어야할것이다.最近銀行,各種企業體,政府,研究機關등에서業務의機械化,新製品의開發,調查資料의集中處理등과關聯시켜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導入,利用을推進함에따라文獻情報의迅速正確한獲得手段으로Documentation의概念이널리普及되는추세이므로特殊圖書館의機能의一部로서,앞에말한情報產業關聯法案에企業 및調查機關特殊圖書館의機能이規定되는것은바롭각한일이나이情報產業法案이圖書館界에서直接提起될性質의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그러나特殊圖書館分野에從事하는司書들이어느機會에情報產業과關聯된特殊圖書館의機能에대한集約된意見을準備할必要的 있음을提言하는바이다.

우리나라의特殊圖書館의範疇에드는圖書館은美國의境遇,政府機關이나產業機關의圖書館,즉Walter Tompson Co. Chicago, Ill.의廣告,마아켓팅도서관, GMC의自動車研究圖書館, P.R圖書館,法律圖書館,

보잉 항공회사의航空宇宙圖書館,科學研究實驗圖書館,中央醫療圖書館,Dow Chemical Co.의化學圖書館,이스트엔코닥會社의光學,色採技術圖書館,New York Times社의新聞圖書館,Time誌社의編輯局參考圖書館等을代表的으로들수있을것이다.

거의大部分의美國의各種機關은제각기圖書館을가지고있다. American Library Directory(1966—1967)에나와있는이들特殊圖書館의數는4,011개에달한다.

美國의圖書館法은1843年Massachusetts洲議會가Boston市의公共圖書館設立과維持를뒷받침하기위해制定한것을最初로New York, Maine, Rhode, Island等여러洲가公共圖書館을維持하기위한圖書館稅의徵收根據를마련키위해制定하기시작하였다. 그以後거의모든洲가洲의豫算으로公共圖書館을뒷받침하고있는데그중14個洲는洲憲法에圖書館에對한規定을두고있다. Arkansas, Iowa, Massachusetts, Michigan, New York等은洲憲法에公共圖書館에대한洲의支援을規定하고있어特徵이되고있다. 이와같이美國의圖書館法은洲마다각기다르므로一括의으로말하기어려우나다음의3가지점에서 대체적으로一致를보고있다.

첫째지역내에公共圖書館의設置를規定하고있다는것,둘째설치된圖書館의運營,監督機關을두고있다는것,셋째設立運營되는圖書館에對한財政의인支援을規定하고있다는것등이다.이밖에公共圖書館에必要한專門의標準을設定하고司書의資格을規定하고있는것이大部分이다.이밖에大學圖書館과學校圖書館도洲에따라다르나各己法의뒷받침을받고있다.

1956年美國會는圖書館奉仕法(Library Service Act)를制定하였는데이것은聯邦政府로하여금洲政府및美領土內에地域公共圖書館을擴張發展시키도록支援하기위한것이다.

이와같이미국의도서관법도주로공공도서관의설치,감독,지원을위한것이며,다른외국의特殊圖書館의位置는거의大同小異할것으로보인다.따라서筆者の주제인特殊圖書館에어떤制度의인뒷받침이있을수없을까하는問題는여전히未濟로남아있다고하겠다.

III. 特殊圖書館과情報管理活動

特殊圖書館에關한法이現實的으로여러가지困難하다는것은위에서大略살펴보았다.그러나特殊圖書館이現代의產業發展에발맞추어그特殊한機能을發揮하기위해서는獨自의인立法推進으로보다는

產業振興과 關聯되는 여러立法過程에서 特殊圖書館의 位置와 機能을反映시키도록 하는 것이 結果的으로 特殊圖書館의 發展에 이바지하는 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面에서의 바람직한 特殊圖書館의 奉仕分野인 經營情報管理問題를 說明함으로서 政府 및 國會에서 앞으로豫想되는 產業立法過程에서 反映되어야 할 特殊圖書館의 立場과 機能을 闡明하는 바이다.

1. 情報管理者로서 特殊圖書館의 意義

一般的으로 圖書館의 機能은 圖書를收集, 整理, 保存하고 이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은 급격한 學問의 發展과 出版物의 比例的인 增加 狀態에서는 이같은 圖書館의 機能은 重大한 試練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는 形便이 되고 있다. 圖書가 唯一한 知識의 容器이던 時代의 圖書館資料는 바로 圖書 그것이 大部分이였으나 知識의 容器가 非圖書資料의 形態로 進化되고 多樣化되는 오늘날의 圖書館, 特히 特殊圖書館은 從來의 圖書整理方式을 適用하기 困難한 만큼 非圖書資料의 數가 增加하여 그 名稱 또한 圖書館(室)이라기 보다는 資料室이라고 박연히 부르는 便이 좋다고 主張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 오늘 날 特殊圖書館의 機能으로서 도큐멘테이션 方式을 導入한 文獻情報活動이 強調되고 있는 實情이다. 特殊圖書館의 機能은 그 所屬機關의 要請에 부응하여 「記錄된 모든 文獻情報의 管理」 혹은 「經營情報의 管理」라는 面에서 理解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러면 特殊圖書館의 세로운 機能으로主唱되는 情報管理란 무엇인가? 우선 情報란 갖가지 情報源으로부터 信憑與否에 關係 없이 一段 받아 드려지는 性質의 知識의 片鱗을 말하는데 이것을 Inform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이 評價되고 整理된 知識으로 달아들인 것을 Intelligence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情報란 주로 記錄된 情報source으로부터 나온 情報(Information) 혹은 記錄으로서의 情報source自體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一般的으로 앞에서 말한 Information과 Intelligence를 區別 없이, 그리고 情報source을 記錄物과는 별相關 없는 것으로 이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點에서 앞서 말한 情報의 概念을 이것과 區分하여 주기 바란다.

日本情報管理研究會의 定義를 빌리면 「情報管理란 各種 情報를 最大限 能率의으로 그리고 適切하게收集, 分類, 整理, 分析, 傳達, 利用토록 하는 一連의 管理方式」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結局 終來의 圖書館機能을 더욱分化하여 ① 圖書館 資料의收集 對象을 非圖書部門에까지 크게擴大하고 ② 整理過程에서 도큐멘테이션의 手法을 採擇하는 한편 ③ 奉仕面에서 이를 所

屬機關의 經營活動과 直接 連結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할 수 있다. 筆者は 우리 나라企業의 最高經營層, 產業界一般, 政府關係部處, 그리고 立法府의 關係者들에게 이같은 情報管理의 機能을 擔當하는 것이 바로 特殊圖書館임을 認識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이들이 情報管理의 重要性을 認識한다면 바로 特殊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機能發揮를 위한 制度的, 人的, 財政的 亂 침을 組織 속에서反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 關係機關의 組織을 規定하는 法, 定款속에 이같은 情報 관리자로서의 特수도서관의 기능이 올바르게 反映되도록 圖書館界의 적극적인 PR活動을 延伸하는 바이다. 筆者は 이것을 본 대회의 主題에 대한 代身으로 提案하는 바이다.

2. 特殊圖書館의 背景과 그 活動 分野

特殊圖書館의 機能으로서의 情報管理가 急速히 要請되고 있는 企業의 一般的 背景으로서 우리는 科學技術의 加速度的인 發展과 世界情勢의 急激한 變化로 世界가 나날이 縮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背景下에서 企業들은 技術革新의 進行, 企業間의 경쟁 격화, 同種企業에 關한 情報文獻의 量의 增加에 대처하여 研究開發의合理化, 情報活動의迅速正確化, 企業經營上의 綜合的인 判斷의必要性 등으로 인하여 關聯分野의 各種 狀況의 分析에 必要한 情報의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 効率的인 管理를 專擔한 도큐멘탈리스트(Documentalist)로서의 情報管理専門家를 要請하고 있다. 經營管理의 一部分으로서의 情報管理活動의 內容인 情報의收集, 分類, 分析, 評價, 判斷, 傳達, PR, 廣告活用 등은 純粹한 圖書館學과 도큐멘테이션 技術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機械化와 그 시스템의適用을必要로하고 있다. 情報管理의 分野는 販賣管理, 生產管理(製品開發, 生產活動)等 企業經營의 모든 分野에 適用되는 것이므로 情報管理擔當者の資格要件은 單純한 特殊圖書館의 司書의 資質의 機械化의 技術에서 經營全般에 걸치는 知識이 要求되는 것이다. 日本의 境遇 慶應義塾大學을 비롯한 各 大學의 圖書館學科와 도큐멘테이션협회에서 도큐멘테이션 강좌를 다루고 있으며 大企業의 調查部, 企劃部, 開發部等에서 調査情報管理의研修를 하고 있다.

그 밖에 產業能率短期大學, 日本能率協會, 其他 電子計算機専門學校 등에서 情報管理의 機械化過程을 講座하고 있으며 各 大學 經濟學部, 經營學部 등에서 事務管理, 人間工學(Time & Motion Study)等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部分的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課程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特殊圖書館奉仕와 關聯되어, 導入되어 特殊圖書館의 機能分化에 이바지하게 되

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外國의 大企業은 企業組織 속에 Line 및 Staff 조직으로서 情報管理 擔當 重役, 情報管理 擔當 部長, 情報管理 擔當 次長, 情報管理 擔當 課長, 情報管理 擔當 係長의 系層이 形成되고 있는 實情이므로 特殊圖書館의 組織內의 位置도 이 系層으로 理解되도록 P.R.되어야 할 것이다.

IV. 結論

이상에서 살펴 본바에 의하면 特殊圖書館에 關한 圖書館法의 改正이란 主題는 實은 그 內容이 별로 없는 것이라도 主題의 結論은 改正 試案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彙結 되었다. 그 代身 特殊圖書館에 關한 內容을 各己 소속된 기관의 法에서 最大限 伸張 시키



平素에 讀書하지 않는 사람은 時間의 으로나 空間의 으로나自己만의 世界에 深く되어 있다. 그 生活은 정해 놓은 型에 끼어 버린다. 그 사람이 접촉하여 談話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親友知己 뿐이오. 그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은 거의 신변의 자질구비한 일에 한해져 있다. 그 深度에서 도피하는 길은 없다. 그런데 한번 책을 손에 잡게 되면 사람은 곧 별세계에出入한다. 萬一 그것이 良書라면 讀者는 갑자기 世界 第一流의 이야기꾼의 한 사람에게 变化하게 된다. 그는 讀者를 뛰어, 먼 별세계, 먼 옛날로 데리고 가서 心中の 오리를 가볍게 하고 讀者가 일찌기 모르던 人生의 온갖 모

도록 圖書館界에서 적극 P.R. 하여야 겠다는 것이다. 特殊圖書館의 機能은 機關에 따라 各己 다르므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나 各 特殊圖書館은 情報管理者로서의 機能을 發展시킴으로서 組織內에서의 位置와 機能強化에 努力하고, 이것을 조직내에 認識 시킴으로 組織내에 特殊圖書館의 機能과 活動을 規定하는 方向으로의 法改正의 努力を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의 P.R.은 勿論이거나 組織內에서 司書自身이 情報管理者로서의 資質을 길러 그 機能發揮에 不足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特殊圖書館의 情報管理者로서의 機能이 認定될 것이고 制度의 體制改善도 可能할 것 이기 때문이다.

양을 말하여 준다. (林語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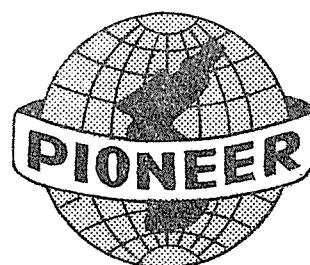
讀書를 사랑하면 항상 思索과 反省의 世界에出入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물리적 物象을 鑄은 書籍이라도 그러한 사람을 친히 보기도 하고 體驗하기도 하는 것과 書冊을 읽어서 아는 것과는 위치가 틀린다. 書籍上으로는 물리적으로 된 일은 한가지 구경거리여서 독자는 구경꾼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級量의 書籍은 우리들이 명상적인 기분으로 유도하는 것이어서 사실 보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林語堂)

1970

海外學術雜誌豫約購讀內容予約

- ◎ 海外 學術雜誌豫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일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豫約購讀에 關한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处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과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끊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의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쿠풍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號

電話 (74) 4855 · (75) 4155